

시공감리 수수료 산출지침 개정

시행 : 2016.2.24

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월 24일 시공감리수수료 산출지침을 개정·시행했다. 감리원 노임단가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배관 등에 대한 시공감리수수료가 평균 2.5% 인상됐다. (편집자주)

□ 개정내용

- 감리원 1일 노임단가를 70만2천원에서 72만원으로 인상
- 시공감리 수수료 인상

대상		금액	
정압(밸브)기지	신규	432만원	
	변경	288만원	
정압기	신규	108만원	
	변경	72만원	
제조소 · 공급소		72만원에 감리소요일수를 곱한 금액	
배관	일반도시가스 사업자 배관	길이 20m 이하	11만 5천원
		길이 20m 초과	11만5천원에 20m를 초과한 매 10m마다 5만8천원을 가산한 금액
	사용자공급관	길이 500m 이하	24만7천원
		길이 500m 초과	24만7천원에 500m를 초과한 매 500m마다 24만7천원을 가산한 금액. 단, 제3조 제2항의 가산금을 제외하고 247만2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.
	가스도매업자	길이 100m 이하	21만 2천원
		길이 100m 초과	216만2천원에 100m를 초과한 매 100m마다 47만9천원을 가산한 금액

※ 개정된 지침 시행전에 신청한 시공감리수수료는 이 지침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. ㉠